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7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신희동 원전산업관리과장(044-203-5321), 김종연 사무관(5313)

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

- 7.1일, 「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」 공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**금년 7.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(부장)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**한다고 밝힘

○ 이를 위해 '14.7.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**「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」를 제정**하여 공고함

□ 금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**「공직자윤리법」 시행령을 개정**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

○ 同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**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**에 따른 것임

< 공직자윤리법 시행령('14.1월 개정, '14.7월부터 시행) >

◇ 제3조(등록의무자)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7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(신설조항)

□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**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총 6개 기관**을 아래와 같이 **지정**함

○ **①한국수력원자력, ②한국전력기술, ③한전원자력연료, ④한전KPS, ⑤한국전력공사, ⑥한국원자력환경공단**

* 기관 內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%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

< 원전 분야별 해당 기관 >

설계	건설·운영	정비	연료	사용후처리	수출
한전기술	한수원	한전KPS	한전연료	환경공단	한전

□ 한편, 금번 조치로 **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**은 6개 기관 총 **1,500여명**이며,

○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**산업부(감사실)에 금년 8.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**해야 하며 **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**에 처할 수 있음

□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하겠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김종연 사무관(☎ 044-203-53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**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**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113호

「공직자윤리법」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“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14.7.1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시행령 제3조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(이하 “원전”이라 한다)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(대상기관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수력원자력
2. 한국전력기술
3. 한전원자력연료
4. 한전KPS
5. 한국전력공사
6. 한국원자력환경공단

② 다만, 제1항제4호,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